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

송휘영**
hysong@yn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3.2 「죽도(울릉도)도해면허」, 취소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인가? |
| 2.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
였는가? | 3.3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
정한 것인가? |
| 3. 에도·메이지 시대 일본의 독도 인식 | 4.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였는가? |
| 3.1 17세기 중반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었는가? | 5. 맺음말 |

주요어: 일본의 고문서(Japanese old document), 독도인식(Dokdo recognition), 에도시대(Edo era), 메이지시대(Meiji era), 관찬기록(official record), 관도(영역)(boundary)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일본 스스로가 기록한 고문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언제부터 어떻게 하여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였는가? 둘째, 역사적으로 독도를 누구의 관도로 인식하여 왔는가? 셋째,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 목적으로 하는 논점은 대개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 밝혀놓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성과들을 발전시켜 ‘독도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는 작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A02068830)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1) 필자에 의한 기존의 연구로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민족문화논총』 44, 2010),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대구사학』 106, 2012, pp.241-270.), 「1898(明治31)년 韓國船 遭難事件에 관한 일고찰(山崎佳子) 비판」(『독도연구』 12, 2012, pp.61-91.), 「일제강점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문화연구』 46, 2013, pp.249-275),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독도연

최근 일본의 독도도발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관차와도 같다. 며칠 전 전후 70주년을 기념하는 아베담화에서는 예상대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제대로 담지 않았고, 교묘한 화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만을 의욕적으로 내세우고 있다.²⁾ 이미 제1차 아베내각(2006.9.26.~2007.9.26)에서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개정³⁾하여 ‘애국심’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였고, 2010년 이후 초중고 교과서에는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008년 2월에 작성된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 「죽도-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논리의 대부분은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⁵⁾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그때까지 주로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내세우던 것에서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함께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 실로 타당한가를 일본의 역사적 사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것은 에도시대와 메이지시대의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시의 산음지방 연안민의 독도 인식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이 예로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주장이 성립하는가를 검증할 것이다.

2. 예로부터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였는가?

일본 외무성의 주장⁶⁾을 보면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독도를

구』 16, 2014, pp.209- 240), 「「죽도외일도」의 해석과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일본문화연구』 52, 2014, pp.271-296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독도 인식’이라는 주요 연구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적 고찰을 부가하는 것으로 한다.

- 2) 「아베담화」는 2015년 8월 14일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무라야마담화」의 4대 키워드인 식민지배, 침략, 사죄, 반성은 모두 표현했지만 교묘한 방식으로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3) 2006년 9월 1일 제1차 아베내각이 출범하였고, 같은 해 12월 22일 전후 처음으로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여기서는 ‘애향심’과 ‘애국심’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4) 2014년 3월부터 「죽도(竹島)-왜 일본의 영토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죽도문제 10의 포인트」로 개정하였고, 중국어 번자체·간자체를 포함한 12개 국어로 확대하고 있다.
- 5) 竹島問題研究会(2007.3)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島根縣總務部總務課
- 6) 日本外務省「竹島」<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5.8.15)

식하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고 한다. 이는 우산·무릉 두 섬의 기록이 나오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나타나는 우산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우산·무릉 1도설을 주장하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어떠한 거름 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⁷⁾ 이들 역사적 인지에 관련되는 것이 외무성의 「10포인트」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Point1: 일본은 예로부터 죽도⁸⁾(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Point2: 한국이 예로부터 죽도(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 Point3: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 Point4: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한편 죽도(독도)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Point5: 한국 측은 안용복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실에 반하는 공술을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⁹⁾

여기서 <Point1>과 <Point2>에 대한 논증은 한국 측 사료에 의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Point3>와 <Point4>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하되 일본의 독도 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언급만 하도록 한다.¹⁰⁾ 또한 <Point5>의 안용복 진술의 진위에 관한 부분은 방대한 사료의 검토를 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 성과¹¹⁾가 많이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의 공식기록에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1454)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원전인 『팔도지리지』는 1432년에 편찬된 것이나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공식기록에서 독도가 송도(松島)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이다.¹²⁾ 여기서 ‘이 주(州)로써 일본의 서북한계를 이룬다’는 기록을 두고 오랫동안 ‘이

7)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저와 「죽도문제연구회」의 『제1기 최종보고서』(2007.3)를 참조할 것.

8) 에도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일본 명칭은 기죽도(磯竹島, 이소타케시마), 죽도(竹島, 다케시마)와 송도(松島, 마츠시마)였다. 독도가 송도, 리양교에서 ‘죽도’로 변경하는 것은 1905년의 독도편입 조치 이후의 일이다. 여기서는 일본식 발음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음독인 ‘죽도’, ‘송도’라고 한다.

9) 전개, 日本外務省 사이트를 참조.

10) <Point1>와 <Point2>에 대한 비판 논문으로, 김호동(2010) 「한일 양국에서 누가 먼저 독도를 인지하였는가-일본 외무성의 竹島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1, 2 비판-」 『민족문화논총』44, pp.3-33이 있음.

11) 예를 들어, 김화경(2010) 「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독도 강탈 과정의 위증」 『민족문화논총』4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pp.71-110

12) 사찬(민간)기록까지를 포함하면, 『大谷家文書』에서 1659年6月條에 처음으로 송도(松島)가 등장함.

주(此州)'의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 학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주는 일본의 오키섬(隱岐島)을 지칭하는 것임이 일반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당시 일본 서북쪽의 판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일 양국의 역사적 인지를 비교해보면 한국 측 기록이 적어도 200년 이상이 앞선다. 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차치하 고서라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한국이 앞선다는 것이다.

3. 에도·메이지 시대 일본의 독도 인식

3.1 17세기 중반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었는가?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자. 「죽도(竹島)-왜 일본의 영토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죽도문제 10의 포인트」(2014.3., 이하 「10포인트」로 약칭한다.)에서 <Point3>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 ↳ 에도시대 초기부터 막부공인 하에 어부들에게 이용되고 있었던 죽도(독도)
- 1618년 돛토리번 호키국 요나고의 초닌(町人) 오야 진키치(大谷甚吉),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는 동 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예의 도해면허를 받았다.
- 양기는 쇼군가의 아육문양을 나타낸 깃발을 세우고 울릉도에서 어렵에 종사하였고, 채취한 전복에 대해서는 쇼군가(將軍家)에 헌상하는 것을 해오고 있었다. 말하자면 동섬의 독점적 경영을 막부공인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 이러한 가운데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죽도(독도)는 항해의 목표물로서 도중의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와 전복 어획의 호지로서 자연스레 이용하게 되었다.
- 그리하여 우리나라(일본)는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에는 죽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와 죽도를 외국령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쇄국령을 발동하여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하였던 1935년에는 이들 섬에 대한 도해를 금지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¹³⁾

13) 日本外務省「竹島」<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5.8.15)

과연 17세기 중반에 울릉도를 드나들었던 오야·무라카와나 막부 각료들도 불법도해의 사실 만에 의해 조선의 울릉도를 탈취하여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까? 우선 『죽도기사(竹嶋紀事)』의 기록을 살펴보자.

「그렇다면 이후 일본인은 그 섬(죽도)에 도해해선 안 된다는 의향인가 하고 물어본즉, (아베 봉고노카미는) 그야말로 그대로이다. 거듭 일본인은 도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죽도의 건은 (조선에) 돌려준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인지 라고 했는데, 그 일도 그대로이다. 원래 (일본이) 빼앗은 섬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쪽에서 결코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 이쪽(일본)의 잘못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분부한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지만 일을 어렵게 말하는 것보다 다소 어긋남이 있더라도 가볍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차분히 침착해야 한다. 돌아가 교부다이유(刑部大輔)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아베 봉고노카미는) 퇴석하였다.」¹⁴⁾

『죽도기사』에서 보면, 당시 「울릉도쟁계」를 논의하기 위해 소 요시자네(宗義眞) 일행은 1695년 10월 에도참근을 하게 되었다. 당시 대조선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응은 달랐으나, 히라타 나오에몽(平田直右衛門)이 막각의 아베 봉고노카미(阿部豊後守)를 만나 울릉도(죽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았던 기록이다. 즉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리기 직전, 죽도(울릉도)의 상황을 논의하는 내용에서 원래 조선의 영역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사실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① 울릉도는 일본인이 거주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어업을 위해 도해를 한 것이다. ②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취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울릉도쟁계’의 결과) 조선에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원래 조선의 영역이다. ③ 죽도일건(竹島一件=울릉도쟁계)을 일으켜 (일본의 죽도라고 주장한 것은) 이쪽의 잘못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한다. ④ 이 당시 송도(독도)와 죽도(울릉도)에 대해 막부가 별도의 조사를 하였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두 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님을 히라타 나오에몽과의 논의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⑤ 당시 막부와 쓰시마번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식한 위에 일본이 빼앗은 바도 없는 섬을 두고 분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17세기 중엽에 적어도 죽도(독도)에 대한

14) 「左候ハ以来日本人者彼島江御渡被遊間敷与ノ思召ニ候哉与伺申候得ハ如何ニモ其通ニ候重而日本人不罷渡候様ニ与思召候由御意被成候故竹島ノ儀返し被遣候与申手ニ葉ニ而モ無御座候哉与申上候得ハ其段も其通りニ候元取候島ニ而無之候上ハ返し候与申筋ニ而モ無之候此方ヨリ構不申以前ニ候 此方ヨリ誤リニ候共 不被申事ニ候 右被仰遣候 趣与ハ少しく違候得とも事おもへれ可申より少しハく違ひ候得とも軽く相濟申候方宜候間此段御ノ簡被成候様ニ与ノ御事故とくと落着申候罷歸リ刑部大輔ヘ可申聞よし申上候而 退座仕ル」(『竹嶋紀事』1695년12월條)

일본의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리고 <Point3>의 주장에서 일본 정부가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구체적 이유로 거론한 5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1625년 에도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발급한 「죽도도해면허」는 그 자체가 외국도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 울릉도는 「기죽도」, 「울릉도」라고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막부가 「죽도」라는 섬에 허가한 도해면허이다,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울릉도가 아닌 죽도로 속여서 도해면허를 청원했거나,¹⁵⁾ 막부가 조선땅 울릉도임을 알고서도 도해면허를 내렸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였다. 이것은 『통항일람』, 『조선통교대기』, 「겐나각서」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막부가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독도는 당시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막부공인으로 도해하고 현상용 전복을 채취했던 섬은 송도(독도)가 아닌 죽도(울릉도)였다. 따라서 조선령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울릉도로의 도해 자체가 불법이다. 셋째, 독도(송도)를 항해의 표적물로 이용되었을 뿐이며, 정박할 포구가 없고 풍파가 심한 독도에서의 어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령 지나는 길목에서 잠시 보았을 수는 있으나 정박지가 없는 곳을 목표로 별도의 도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쇄환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던 불법도해의 사실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7개조답변서」, 「하치에몽사건」, 「태정관지령」을 통해서도 당시의 일본 정부가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보았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조선영토에 “17세기에 영유권이 확립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죽도도해면허」는 1회성의 도해 면허였다. 따라서 쇄국령 하의 도해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3.2 「죽도(울릉도)도해면허」 취소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인가?

일본 외무성의 <Point4>를 보면 “17세기말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하는 한편, 죽도(독도)로의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당시 대두되었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로 ‘울릉도 도해’만을 금지했다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 ① 일본 도쿠가와막부가 1696년 1월 취소한 것은 ‘죽도도해면허’뿐이고, 송도(독도)는 일본영토로

15) 당시의 정황을 보면, 울릉도는 ‘기죽도(磯竹島) 또는 ‘울릉도(鬱陵島)’로 정확히 인식되고 있었다. 겐나(元和) 연간에 발생한 사기사카 야자에몽(鷺坂弥左衛門)·니에몽(仁右衛門) 부자의 잠상사건(1620)을 보면 막부와 쓰시마번은 기죽도가 조선의 관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인정하여 도해를 취소하지 않았다.

- ② 당시 막부가 울릉도와 죽도(독도)를 외국령이라고 인식하였다면 쇄국령을 발동하여 해외도항을 금지하였던 1635년에는 이들 섬에 대한 도해를 금지했어야 하나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우선 이들 주장을 검토해 보자. 안용복 사건을 통해 「죽도도해금지령」이 발령되었고, 그 과정에서 1695년 12월 25일 울릉도·독도의 소속을 돛토리번과 다른 일본의 지방 부속의 섬이 아님을 확인했다. 게다가 에도막부는 당시 송도(독도)의 존재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1695년 12월 10일 막부는 쓰시마번과의 회합에서 독도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다.¹⁶⁾ 따라서 「송도도해면허」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막부가 독도(송도)를 인지하지조차 못한 송도에 「송도도해면허」를 발급했다는 것과 「송도도해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송도(독도)를 17세기 중반에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거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둘째, 「죽도도해금지령」 이후 울릉도·독도로의 도항이 금지되어 도해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덴포 죽도일건」에서 허가 없이 울릉도로 도해했던 하치에몽(八右衛門)이 처형되었는데, 이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한 막부의 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하치에몽의 「죽도사건」 공판 자료에서 “송도로의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울릉도로 도해한다면 어떤가?”라는 기록으로 송도(독도)의 일본 영토 인식을 주장하나, 하치에몽이 도해 때 자신이 그린 「죽도방각도(竹島方角圖)」를 보면 울릉도(죽도)와 함께 독도(송도)가 조선영토로 명백히 그려져 있다. 이는 하치에몽의 독도 인식을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이다. 또한 ‘이 판결문은 도해금지령이 독도와는 무관하다’는 점과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 도해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등 이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쿠가와막부가 내린 1696년 1월 「죽도도해면허」 취소와 함께 산음지방 연안민들에 의한 송도(독도)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민들은 1900년 이전까지 독도만을 목표로 한 도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1696년 당시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오야무라카와 두가문의 문서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고, 처형을 당한 밀무역업자 하치에몽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그의 지도 속에서 명백히 그려 넣고 있다.

넷째, 당시의 도해면허(관청문서=월경 허가장) 자체가 외국영지로의 월경을 의미하였다.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

16) 『죽도기사』의 기록을 보면 에도막부가 송도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는 것은 이때임. 『竹島紀事』 1695年12月條

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섯째, 돗토리번에 문의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내렸다. 즉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7세기 말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것이다. 이들과 관련된 사료들을 검토해보자. 우선 「죽도도해면허」(1625.5.16.)¹⁷⁾는 아래와 같다.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에서 죽도로 작년에 배로 도향한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번에 도향을 함에 있어서는 요나고 촌닌(町人)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 오야 진키치(大谷甚吉)가 신청한 건에 대해 들어본 결과, 이의는 없다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뜻을 얻어 도해의 건은 허가하도록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1625) 5월 16일

나카이 시나노노카미
이노우에 가즈에노카미
도이 오오이노카미
사카이 우타노카미

마즈다이라 신타로 님¹⁸⁾(「죽도도해면허」)

여기서 「죽도도해면허」는 1회성의 도해를 허락한 면허로, 이것을 가지고 양가는 70년간 계속해서 울릉도도해를 하였다. 따라서 이 면허를 가지고 독도에 도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17세기 중엽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독도만을 목표로 단독 도해를 시도한 것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죽도도해면허」는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로의 도향을 할 때 발급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 면허를 막부가 발급했다는 사실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간주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면허의 발급 자체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17) 「죽도도해면허」의 발급 시기는 현재 1625년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1626년 또는 1628년의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18) 「從伯耆國米子竹島江先年船相之由に候 然者如其今度致渡海度之段米子町人村川市兵衛大谷甚吉申上付而達上聞候之處不可有異儀之旨被仰出候間被得其意渡海之儀可被仰付候 恐々謹言
(1625年) 五月一六日

永井信濃守
井上主計守
土井大炊頭
酒井邪樂頭

松平新太郎殿(「竹島渡海免許」原文)

다음으로 증거자료로 「울릉도쟁계」의 과정에서 에도막부의 문익에 대한 돗토리번의 「7개 조답변서」(1695.12.25)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죽도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부속이 아닙니다.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 초닌(町人)인 오야 규에몽(大屋九衛門),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라는 자가 도해하여 어업을 한 것은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영지로 하사 받았을 때 봉서(奉書)로써 허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도해하는 일이 있었다고도 들었습니다만, 그 일은 잘 모릅니다.
1. 죽도는 둘레가 약 8 ~ 9리 정도라고 하며,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1. 죽도에 고기잡이를 나가는 시기(時節)는 2월, 3월 무렵 요나고를 출항(出船)하여 매년 나갔습니다. 섬에서는 전복, 강치(みち) 잡이를 하며 선박 수는 크고 작은 배 2척이 갑니다.
1. 4년 전의 신년(申年, 1692)에 조선인이 섬에 와 있었을 때, 선장들이 만났던 일에 관해서는 당시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해 유년(酉年)에도 조선인이 와 있으며, 선장들이 그 중 2명을 데리고 요나고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보고 드리고 나가사키로 보냈습니다. 무년(戌年)에는 바람 때문에 섬에 착안(着岸)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올해(當年)도 도해하여 보니 이국인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착안(着岸)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歸途)에 송도(松島)에서 전복을 조금 잡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도 보고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1. 신년(申年, 1692) 조선인이 왔을 때, 선박 11척 중에서 6척이 강풍을 만나 나머지 5척이 섬에 왔는데 인원 53명이 있었습니다. 유년(酉年, 1693)에는 선박 3척, 인원 42명이 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배의 수도 많았고 사람도 많이 보였습니다. 착안(着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1. 죽도, 송도 그 외 양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 이상¹⁹⁾(「7개조답변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돗토리번에 부속되지 않는 섬이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다.

19) 「一、竹島は因幡伯耆附屬にては無御座候。伯耆国米子町人大屋九右衛門、村川市兵衛と申者渡海漁仕候儀、松平新太郎領国の節、以御奉書被仰出候旨承候。其以前渡海仕候儀も有之様には及承候得共、其段相知不申候事。
 一、竹島廻凡八九里程有之由、人居無之候事。
 一、竹島江漁採參候時節は、二月三月比米子出船。毎年罷越候。於彼島砲みちの魚獵仕候。船数大小二艘參候事。
 一、四年以前申年朝鮮人彼島江參居候節、船頭共參逢候儀其節御届申上候。翌酉年も朝鮮人參居中内、船頭共參逢、朝鮮人式人連候て米子江罷歸、其段も御届申上、長崎江相送申候。戌年は遭難風彼島着岸不仕段御届申上候。当年も渡海仕候処異国人人数多見江申に付、着岸不仕罷歸候節、松島にて砲少々取申候。右之段御届申上候事。
 一、申年朝鮮人參候節、船拾壹艘の内六艘遭難風、残五艘は彼島に留り、人数五十三人居申候。酉年は船三艘、人四十二人居申候。当年は船数余多、人も多相見江申候。着岸不仕候付分明無御座候事。
 一、竹島、松島其外兩國江附屬の島無御座候事。以上。」

또한 추가 질의에서 돗토리번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도해하는 일은 없으며 두 섬은 “일본의 다른 어떤 지방에 소속된 섬도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부속섬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지게 된다.

「선년 마츠타이라 신타로 인슈(因州)·하쿠슈(伯州)를 영지로 다스리던 때에 문의가 있었던 하쿠슈(伯州) 요나고의 초닌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 오야 진키치(大屋甚吉)가 죽도에 도해하여 지금까지 어렵게 하여왔으나 향후에 죽도로의 도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으므로 이를 알고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삼가 아뢰니다(恐々謹言).

1월 28일 츠치야 스가미오카미 마사나오(土屋相模守政直)

도다 야마시로노카미 다다마사(戶田山城守忠昌)

아베 붕고노카미 마사타케(阿部豊後守正武)

오오쿠보 가가노카미 다다토모(大久保加賀守忠朝)

마츠타이라 호키노카미(松平伯耆守)님²⁰⁾(「죽도도해금지령」1696.1.28)

위의 「7개조답변서」를 비롯한 제 정보를 취합한 막부는 결국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지에 부속된 땅이 아님을 확인한 위에,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죽도도해금지」는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의 도해를 금지한 것임은 명확한 것이다. ① 1695년 12월 24일과 1696년 1월 25일 송도에 대한 조회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양국에 부속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다른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돗토리번 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소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하였다. ② 이때 막부는 울릉도·독도의 소속이 일본의 소속이 아님을 인지하여 조선의 영지라고 생각하였기에 「죽도도해금지령」을 돗토리번과 쓰시마번에 대해 내리게 된 것이다. 즉 「울릉도쟁계」 논의의 과정에서 아베 붕고노카미와 쓰시마번 가신 히라타의 회합에서 일본 부속의 섬이 아님을 알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20) 「先年松平新太郎因州伯州領知の節、相伺の伯州米子の町人村川市兵衛・大屋甚吉竹島江渡海、至干今雖致漁候。向後竹島江渡海の儀制禁可申付旨被仰出候間、可被存其趣候。恐々謹言

正月廿日 土屋 相模守

戶田 山城守

阿部 豊後守

大久保加賀守

松平伯耆守殿(「竹島渡海禁止令」)

3.3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인가?

예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인식했으며,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주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다. 이 문서는 근대 일본의 지적편제와 지도 편찬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려진 조치이다. 여기서는 과거 에도시대 영유권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검토한 다음 울릉도와 독도(죽도·외일도)는 일본의 판도가 아니므로 명심하라는 결정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도 공식적인 견해는 회피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일본 「고유영토론」 주장의 최대의 걸림돌이자 근대 일본의 독도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은 당시 일본 최고의 정치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지금의 총리)이 내린 공문서(지령)이므로 정부의 법적 구속력이 지대한 문서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외무성의 독도(죽도) 홍보홈페이지에서는 아직 「태정관지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문서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 주장이 스스로 허구라는 것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죽도문제연구회」 등 일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다.

- ① 시마네현의 경우, 기존의 보고서 『죽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와 『죽도문제 100문 100답』에서 “「죽도·외일도」의 ‘죽도’와 ‘외일도(송도)’는 당시 명칭혼란을 야기한 서양유입 지도의 영향이며, 이는 모두 울릉도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죽도·외일도」는 당시 죽도라고도 송도라고도 불렀던 하나의 섬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다.(스기하라, 야마자키, 시모쥬, 츠카모토²¹⁾ 등)
 - 17세기말의 분쟁은 울릉도 출어에 관한 것으로 죽도(송도)는 일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 메이지시대의 송도는 서양지도나 해도에서 울릉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태정관지령의 「죽도·외일도」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로 한국 외무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도·외일도」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츠카모토)
 - 1880년 전후 메이지 정부에서의 명칭혼란은 당시 쇄도한 「송도개척원」, 「죽도개간원」 등의 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다.(죽도문제연구회)
- ② 태정관지령의 「죽도(울릉도)·외일도(독도)」에서 ‘죽도(竹島)’도 ‘송도(松島)’도 모두 울릉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죽도라고도 송도라고도 불렀던 하나의 섬 울릉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다”

21) 단, 츠카모토(塚本)는 최근 「죽도·외일도」의 ‘외일도」가 송도(독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정관지령」은 죽도(울릉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塚本孝(2015), 「“独島連”の「島根県知事に対する質問書“独島20問”」について」第3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所, 『第3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231-232

는 의미이다.(죽도문제연구회)

그러나 이 「태정관지령」이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 내용이 명확해진다. 1877년 메이지 행정부는 근대적 지적편찬을 위해 지도 및 지적도를 검토하던 중 시마네현 앞 바다에 죽도와 송도라는 두 섬이 있음을 알고, 그 소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마네현에 조회를 하게 된다. 조회의 과정에서 시마네현은 내무성에 대해 두 섬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모아 보고를 하면서, 이 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문의하였다. 그리하여 5개월간에 걸친 심의조사의 결과 1877년 3월 29일 “문의한 「죽도의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는 섬이므로 명심할 것”이라는 「태정관지령」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죽도의일도」 당시 일본 메이지 행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로 인식했던 죽도와 송도임을 명백하다. 두 섬은 일본의 판도 밖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는 당연히 「겐로쿠 죽도일건」의 시기에 조선 정부와 논란이 있었던 문서들을 검토한 다음 결정하였으므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태정관지령」에 첨부된 부속지도(<그림 1> 참조)를 보더라도 당시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역 밖으로 간주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내지는 「17C영유권확립설」은 성립될 수 없으며, 고유영토론 자체가 허구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문서이다.

또한 이보다 7년 앞서 작성된 일본 외무성의 자료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4.15)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드러난다. 메이지유신 이후 「강화도조약」(1876)이 맺어지기 이전 조선과 일본은 국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 「정환론」이 일고 있던 메이지행 정부는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3명의 외무성관료 사다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카에를 보내 조선의 내정을 정탐케 한다. 그때 하달한 정탐항목의 14번째가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것으로 이 두 섬이 어떻게 하여 조선의 부속이 되어 있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 이 문서이다. 이 문서만 보더라도 당시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죽도(송도)를 조선령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은 물론, 여기서 메이지 행정부도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 섬이 어떤 경위(始末)로 조선에 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게 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막부의 송도(독도)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5개조답변서」(1696.1.15.)로도 확인할 수 있다.

「 각(覺)

1.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에서 이즈모국(出雲國) 구모즈(雲津)까지의 거리 10리(里) 정도
1. 이즈모국(出雲國) 구모즈(雲津)에서 오키국(隱岐國) 다쿠히야마(燒火山)까지의 거리 23리 정도

- 1. 오키국(隱岐國) 다쿠히야마(燒火山)에서 동국(同國) 후쿠우라(福浦)까지 7리 정도.
- 1. 후쿠우라(福浦)에서 송도(松島)까지 80리.
- 1. 송도(松島)에서 죽도(竹島)까지 40리.

이상. 자(子)(1696) 1월 25일

별지(別紙)

- 1. 송도(松島)까지 호키국(伯耆國)으로부터 바닷길(海路) 120리 정도 됩니다.
- 1. 송도(松島)에서 조선까지는 80~90리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1. 송도(松島)는 어느 쪽 나라(國)에도 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1. 송도(松島)에 어령을 하러 가는 건은 죽도(竹島)로 도해할 때 지나가는 곳이므로 잠시 들러 어령을 합니다. 다른 영지(他領)로부터 어령을 하러 오는 일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즈모국(出雲國), 오키국(隱岐國)의 사람들은 요나고(米子)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이상 (1696년) 1월 25일²²⁾ (「5개조답변」)

죽도와일도의 판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무성은 에도시대의 문헌을 죄다 찾아 검토하게 된다. 이 「5개조답변서」는 1695년 12월 24일 돗토리번의 죽도에 대한 답변서 「7개조답변서」를 통해 막부는 처음 송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섬 송도에 대한 질의서를 돗토리번에 재차 보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서가 이 문서이다. 여기서 보면, 「태정관지령」과 마찬가지로 죽도 및 송도를 당시 돗토리번의 어민들은 세트로 간주하였으며, 죽도는 물론 송도도(일본의) 어느 쪽 나라(지방)에도 속하지 않으며, 죽도도해 때 지나가는 곳으로 잠시 어령을 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다른 어떤 지방에서 울릉도·독도로 도해하는 사람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내무성은 일본해(동해) 가운데 있는 섬 울릉도와 독도의

22) 「 覚

- 一、伯耆国米子より出雲国雲津迄道程十里程。
- 一、出雲国雲津より隱岐国焼火山迄道程二十三里程。
- 一、隱岐国焼火山より同国福浦迄七里程。
- 一、福浦より松島江八十里。
- 一、松島より竹島江四十里。

以上 子正月廿五日

別紙

- 一、松島江伯耆国より海路百式十里程御座候事。
- 一、松島より朝鮮江は八九十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 一、松島は何れの国江附候島にても無御座由承候事。
- 一、松島江獺参候儀、竹島江渡海の節道筋にて御座候故、立寄獺仕候。他領より獺参候儀は不承候事。尤出雲国、隱岐国の者は米子のものと同船にて参候事。

以上 正月廿五日 (「五個條返答」原文)

판도가 조선에 있음을 인식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리는데 이것이 「태정관지령」(1877.3.29)이다.

「일본해 내의 죽도외일도 지적편찬 방침 문의

죽도 소관의 건에 대하여 시마네 현으로부터 별지의 문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이 섬은 겐로쿠 5년(1692년) 조선인 입도 이래 별지서류에 있는 바와 같이 겐로쿠 9년(1696년) 정월 제1호 구정부 평의의 뜻에 따라 2호, 역관 하달서(達書) 3호, 당해 국(該國) 내간(來柬) 4호, 본방(本邦) 회답(回答) 및 구상서 등과 같이, 즉 겐로쿠 12년(1699년)에 이르러 (서간의) 왕복을 마침으로써 우리나라와 관계없다고 들었으나, 판도(版圖)의 취사(取捨)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이 건을 문의함.

1877(메이지 10)년 3월 17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대리

내무소보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전

(붉은 색 가필)

문의한 취지의 죽도외일도의 건은 본방(本邦,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할 것.

1877(메이지 10)년 3월 29일²³⁾ 「태정관지령」(1877.3.29)

여기서 보면, 일본해 안에 있는 「죽도외일도」에 대해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대한 조회를 거쳐 조사하여 파악한 결과를 태정관에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태정관은 관계서류를 점검한 다음, 일본해(동해) 안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 지령문을 내린 것이다.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는 시마네현의 문의서를 보더라도 또한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를 보더라도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섬임은 명백

23)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伺出取調候處該島之儀ハ元禄五年朝鮮人入島以来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禄九年正月第一号旧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二号 譯官へ達書三号該國來柬四号本邦回答及ヒ口上書等之如ク則元禄十二年ニ至リ 夫々往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關候得共版圖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為念此段相伺候也

內務卿 大久保利通代理

明治十年三月十七日

內務少輔 前島密

右大臣 岩倉具視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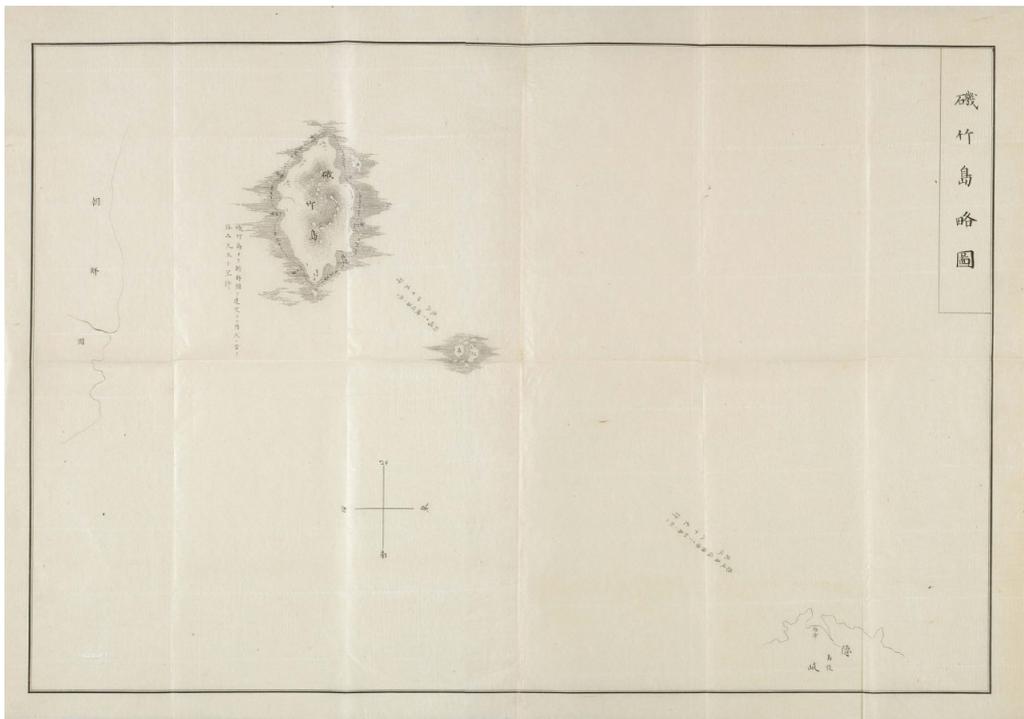
(朱書き加筆)

伺之趣竹島外一島之儀本邦關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

明治十年三月二十九日(「太政官指令」原文)

한 사실이다. 당시 메이지 행정부는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역 밖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도시대 「울릉도쟁계」의 결과 조선의 섬으로 조선령으로 인정한 송도(독도)라고 명확히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 공문록에 보관된 「태정관지령」에 관한 일련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일본 해(동해) 안에 있는 「죽도외일도」의 위치를 그려 넣은 「기죽도약도」가 문서 뒤에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이 문서에서 「죽도외일도」가 울릉도와 독도를 나타내는 것임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는 이 부속지도인 「기죽도약도」만 보더라도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섬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17세기 중엽에 이미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됐다는 주장은 일본의 고문서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 「기죽도약도」(1877.3.29)

4.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인가?

울릉도와 독도, 오키섬은 우리의 동해안에 남동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세 섬 모두 망망대해 점재하여 울진-울릉도 135km, 울릉도-독도 87.4km, 독도-오키섬 157.5km, 오키섬-마츠에 70km 정도로 위치하고 있다. 해저 지질대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깊은 해구가 형성되어 있지만, 독도는 가장 가까운 지근의 거리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울릉도의 부속섬이라 생각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의 생활 권역에 포함되고 있으며 과거 울릉도를 근거로 하여 독도로의 도항활동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과거에 울릉도를 드나들었던 일본인의 인식은 어떠한가?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를 비롯한 일본 측 주장의 개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다.” “울릉도도항이 금지되었으므로 독도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고 오류이다.(죽도문제연구회)
 - 17세기 말 겐로쿠시대에 울릉도 소속을 둘러싸고 일본과 당시의 조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쓰시마의 소씨를 통해 외교교섭을 한 결과 막부는 지금까지 허가해왔던 요나고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다.
 - 그러나, 이때 외교교섭의 대상이 된 것은 울릉도만으로 죽도(독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왕복문서에서도 일체 언급된 바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은 울릉도와 ‘그에 부속하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확인되었으며, 더구나 일본인의 울릉도 ‘방면’ 도항을 금지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한국은 죽도(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므로 울릉도가 한국땅이면 죽도(독도)도 한국땅이라는 논의를 1954년 9월 23일자 양국정부 교환 문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속도가 아니다.
- ② 국제법상 본토라고 할 만한 육지와 주섬(主島)라고 할 만한 섬 가까이 있는 소도(小島)는 본토·주섬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90km나 떨어진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로서 운명을 함께 한 일은 없다.(죽도문제연구회)
 -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라는 한국의 주장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우산·무릉 두 섬’, ‘우산도·울릉도’와 같은 기술, 울릉도 근방에 우산도를 그린 지도 등이 그 기저에 있다.
 - 먼저 기록된 우산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것은 이상하다. 울릉도 근방에 그려진 우산도는 울릉도 앞바다 2km 떨어져 있는 다른 소도(죽서)로 한국이 말하는 독도(죽도)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독도(송도)를 울릉도(죽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에도시대 울릉도 도해를 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고문서를 통해 보더라도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거나 취급하고 있었다. 에도시대 막부의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얻어 울릉도로 도해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독도 인식은 ‘죽도지내송도(竹島之内松嶋)’, ‘죽도근변송도(竹島近邊松嶋)’ 혹은 ‘죽도근소지소도(竹島近所之小嶋)’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당시 이들 어민들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된 섬으로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인 사료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당시 죽도도해에 관여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장차 또는 내년부터 죽도 안에 있는 송도에 귀하가 도해할 것이라는 취지를 선년에 시로고로(아베)가 로쥬(老中)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大谷家文書」, 1660.9.5.)²⁴⁾
- ② 「그런데 죽도 근처의 소도에 소선이 도해한다는 뜻을 지난해에 귀하가 말씀하시길, 오야규에몽 측은 같은 마음이 아니므로 귀하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말하기를, 당분간은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야도 건너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니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귀하만 건너가도 된다고 말해두었습니다.」(「大谷家文書」, 1662.9.8)²⁵⁾

① 「오야가문서」의 기록은 당시 「죽도도해면허」를 주선하고 있었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요나고성의 성대(城代)였던 아베는 독도를 울릉도 내에 있는 섬 즉 울릉도의 속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②의 문서는 「오야가문서」의 1662년 9월 8일조 기록으로, 송도도해의 건에 대해 가메야마 쇼자에몽(龜山庄左衛門)이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 쪽에 보낸 서신의 사본을 오야 가문의 오야 미치요시(大屋道喜)에게 보낸 기록이다. 가메야마는 아베 시로고로의 측근으로 에도와의 연락책을 담당할 인물이다. 가메야마도 송도(독도)를 죽도(울릉도) 근처의 작은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① 죽도(竹島)와 송도(松島)가 조선 부속으로 된 시말(始末), 본 건 송도(松島)는 죽도(竹島)의

24) 「将又来年より竹島(鬱陵島)之内松島(竹島)へ貴様舟御渡之筈ニ御座候旨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大谷家文書」1660.9.5)

25) 「然者竹島近所之小嶋へ小船渡海之儀去年貴様被仰候へ大屋九右衛門方へ同心無之候間貴様斗にて可遣哉と被申候間其節我等申候へ当分同心無之候ても定而所務も有之候大屋も渡度と被申にて可有之候口上にてハ無同心と申分ハ実儀共不被存候 其内ハ貴様斗御渡し可被 成哉と申置候.」(『大谷家文書』目録2-25, 川上健三, 1966, p.78).

인도(이웃섬)으로서 마쓰시마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²⁶⁾

② 「일본해 내의 죽도와외도 지적편찬 방침 문의

귀성 지리과(地理寮) 관원이 지적편찬 검열을 위해 본 현(시마네 현)을 순회한 바, 동해(일본해) 안에 있는 죽도 조사 건에 대해 <별지乙 제28호>와 같이 조회하고자 한다. (후략)

메이지 9년 10월 16일 현령 사토 노부히로(佐藤信寬) 대리

시마네현 참사(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郎)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전²⁷⁾

③ 「울릉도와 죽도가 동도이명인 것이 분명하고, 송도 역시 죽도와 동도이명인 것 같은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죽도의 속도인 것 같습니다. 위의 죽도 이외에 송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미 죽도에 일본인이 가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섬보다 가까운 송도에 가본 사람이 없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竹島考證』下)²⁸⁾

이 문서들은 모두 당시 정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우선 ①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부 속이 되어있는 경위를 조사해 오라는 메이지정부에 대해 3명의 외무성관료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키에가 조선의 내정을 정탐하여 보고한 복명서이다. 송도는 죽도에 이웃한 인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외무성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 로 취급하고 있다. 산음지방의 일부 사찬기록에서 보면 오키국의 송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죽도도해면허를 회복하려는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작위적으로 오키에 부속한 것처럼 적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기록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 혹은 근방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는 「태정관지령」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시마네 현의 독도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내무성이 시마네현 앞바다에 있는 도서에 대한 문의를 보내라고 하자, 시마네현은 내무성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동해(일본해) 내에 있는 「죽도와외도」에 대해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시마네

26) 「一 竹島松島朝鮮附屬ニ相成候始末 此儀松島者竹島之隣島ニ而松島之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 1870.4)

27)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 御省地理寮官員地籍編纂莅檢ノ為本縣巡回ノ砌日本海中ニ在ル竹島調査ノ儀ニ付別紙乙第二十八号ノ通照會有之候處
明治九年十月十六日 島根縣參事 境二郎 縣令佐藤信憲代理
内務卿 大久保利通殿」

28) 「蔚陵島ト竹島ハ同島異名ノ事判然シ松島モ亦竹島ト同島異名為ルカ如シ否ラサルモ其屬島ナルカ如シ右竹島ノ外ニ松島ナル者アリテ我近キ所ニアラバ既ニ竹島日本人行キ葛藤ヲ生セシヲ見レハ其島ヨリ近キ松島ヘハ必ラス行キタル人ナシト云フベカラズ。」(『竹島考證』下, 1881.9.8., p.494)

현 지도에 포함할 것인지를 내무성에 조회한 문서이다. 시마네현에 대한 조회를 거쳐 울릉도 독도에 대해 조사하여 파악한 결과를 내무성은 태정관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태정관은 관계서류를 점검한 다음, 일본해(동해) 안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은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 지령문을 내린 것이다.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외일도」는 하나의 세트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시마네현의 독도 인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음지방의 주민들은 과거 겐로쿠시대의 울릉도도해의 사실로부터 전해들은 바로 독도는 울릉도에 가까운 섬으로 하나의 세트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③은 『죽도고증』에 실린 외교관련 기록으로, 이 문서는 러시아 공사관의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瀨脇壽人)가 1878년 8월 15일 나가사키의 시모무라 유하치로(下村輸八郎)의 의뢰를 받아 제출한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이치(田邊太一)가 송도 조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서와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의 정리 문서 안의 기록이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외무성에서는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울릉도의 이칭으로서의 송도(松島)에 대해서도 외국 해도상의 「마츠시마」라고 기록하고 있는 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죽도와 송도는 이미 에도시대에 한일 정부 간에 영유권 문제로 이미 결착이 내려진 섬이라는 것과, 송도(독도)가 죽도(울릉도)에 부속한 속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근세·근대의 일본 측 기록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지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고 있으며, 1869년 일본 외무성이 조선의 내탐을 위해 파견한 고관의 보고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에서도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이웃섬(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외무성의 기록 『죽도고증』(1881)에서도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1870년대 말 울릉도-죽도-송도의 명칭혼란이 있었을 때, 일본 외무성 공신국장 다나베 다이이치(田邊太一)의 「의견서」에서도 「송도(독도)는 울릉도의 속도(鬱陵島ノ屬島)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메이지의 지적편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한 시마네현의 품의서에 대해, 당시 최고의 결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죽도외일도(竹島外一島)는 본방(일본-필자)과 관계없다”고 하여 두 섬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여 취급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에도시대 및 메이지시대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한 섬의 부속섬 혹은 하나의 세트로 간주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어민뿐만 아니라, 외무성 및 태정관, 해군 수로부까지도 독도를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보지 않고 울릉도와는 불가분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표 1>참조).

<표 1>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성을 나타낸 일본의 기록

날짜	기록 내용	문헌	비고
1659. 6. 21.	죽도근변송도(竹嶋近邊松嶋)	『控帳』, 『大谷家文書』	
1660. 9. 5.	죽도지내송도(竹嶋之内松嶋)	『大谷家文書』	
1662. 9. 8.	죽도근소지소도(竹嶋近所之小嶋)	『大谷家文書』	
1870. 4. 15.	송도는 죽도의 인도 (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日本外交文書』
1877. 3. 20.	죽도의외일도(竹島外一島)	『太政官指令文』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생각함
1878. 12.	송도는 울릉도의 속도 (鬱陵島ノ屬島)	『竹島考證』	외무성 공신국장 타나베(田辺太一)의 「의견서」

주: 송휘영(2012)에서 가필 수정함.

5.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홍보용 팸플릿과 시마네현 홍보책자, 일본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일본의 독도 인지 및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그것도 일본 사료를 통해 고찰해 보면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가 명확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공개된 고문서에만 의존하더라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판도로 보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예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였고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이 확립됐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다. 자신들의 거짓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한 관찬서의 기록까지 교묘하게 부정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재침탈을 의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저질렀던 제국주의적 침략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재무장의 움직임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그릇된 영토교육을 확산하는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본고에서 밝혀진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인식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국의 관찬서의 기록만 보더라도 일본 공식 기록에서 독도(송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세종실록』 「지리지」(1454, 1432) 보다 200년 이상 이후인 『은주시청합기』(1667)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조차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인지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둘째,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하나, 조선의 영역임을 인지하면서 몰래 도해했던 울릉도도해의 길목에 있어 표식으로 삼거나 간혹 돌아가는 길에 전복을 잡는 정도였다.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계기가 되는 돛토리번의 「7개조답변서」에서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이미 확인하였고 막부도 이로써 처음 독도(송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중앙 정부인 막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도해한 어민과 돛토리번도 자신의 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한 이 섬에 어찌 영유권이 확립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죽도도해금지령」(1696.1)에서 당시 ‘죽도(竹島)’라고 불렀던 울릉도에 대한 도해만 금지하였고,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 「송도도해면허」는 존재하지도 않고 발급됐다는 기록도 없으며 실제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송도만을 목표로 도해한 적은 없다. 또한 「죽도도해금지령」 이후 단 한 번도 송도(독도) 도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넷째, 「태정관지령」(1877.3)은 근대 일본의 최고 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의 지령문으로 “울릉도와 독도(죽도의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라 조선의 판도에 속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태정관지령」의 존재를 일본 정부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독도는 지리적 또는 지질학적으로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세 및 근대에 울릉도를 드나들었던 일본인과 일본 정부는 두 섬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았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17세기에 발생했던 「울릉도쟁계」에서 독도(송도)를 제외한 울릉도(죽도) 도해만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교묘한 술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일본 고문서를 통해 근세·근대 일본의 독도 인식이 과연 어떠한었으며 그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판도로 간주하였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역사 사료 속에서 일본의 독도 인지는 한국에 비해 200년 이상 이후의 일이고 그것도 울릉도 도해를 가기 위한 표식(목표물)으로 이용하는 정도였다. 독도의 판도를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은 ①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다시 말해 독도(송도)를 일본의 판도와 즉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 「울릉도쟁계」의 최대 전환점이 되는 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조희에 대한 뚝토리번의 「7개조답변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뚝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다’고 명언한 사실, ③ 「조선국교계시말내담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국 부속이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점, ④ 1877년 3월 29일 발령한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울릉도)외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할 것’이라고 천명한 점 등 일본의 관찬기록 그 어디에도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보고 있다.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일본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판도 밖으로 인식한 독도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인가?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고유영토론」이라는 허위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그릇된 역사교육과 영토교육을 주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들에게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參考文獻】

- 송휘영(2010) 「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민족문화논총』4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2) 「근대 일본의 수로지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 『대구사학』106
- _____ (2012) 「『1898(明治31)년 韓國船 遭難事件에 관한 일고찰(山崎佳子)』 비판」 『독도연구』12,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_____ (2013) 「일제강점기 울릉도 거주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46
- _____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1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_____ (2014) 「『죽도외일도』의 해석과 메이지 정부의 울릉도·독도 인식」 『일본문화연구』52
- 이케우치 사토시(2009) 「일본 에도시대의 다케시마-마츠시마 인식」 『독도연구』6,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김호동(2008)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조선시대 수토제도의 향후 연구방향 모색」 『독도연구』5,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_____ (2005) 「조선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空島政策’ 재검토」 『민족문화논총』3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第3期島根縣竹島問題研究會(2015) 『第3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島根縣總務部總務課
- 第2期島根縣竹島問題研究會(2012)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島根縣總務部總務課
- 池内敏(2012) 『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 (2011) 「竹島 / 独島と石島の比定問題・ノート」 『HERSETEC』4-2, 名古屋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 _____ (2009) 「安龍福英雄伝説の形成・ノート」 『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55
- _____ (2008) 「安龍福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10
- _____ (2007)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90-1
- _____ (2007) 「隠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 『鳥取地域史研究』9
- _____ (2006) 「『竹島 / 独島=固有の領土論』の陥穽」 『ラチオ』2, 講談社
- _____ (2006) 『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 (2005) 「近世から近代に到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 『日本海域歴史大系』第四卷近世篇 I, 清文堂
- _____ (2001) 「17-19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756

島根縣總務部總務課(2011)『竹島問題關係資料第2集 島根縣所藏行政文書』島根縣
 竹内猛(2011)「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郷土石見』87, 石見郷土研究懇談會
 _____(2010)『竹島=獨島問題 「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報光社(송휘영·김수희 역 『독도=죽도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도서출판선인, 2013)
 塚本孝(2011)「勸告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14
 朴炳洙(2008)「明治政府の竹島=獨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8號, 鳥取短期大学 北東アジア文化研究所
 下條正男(2004)『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377
 内藤正中(2000)『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多賀出版
 田川孝三(1988)「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東洋文庫書報』20 (初出は1960年以前)
 堀和生(1987)「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 朝鮮史研究会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山邊健太郎(1965)「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コリア評論』7-2

<고문서>

「竹島渡海禁止并渡海沿革」『鳥取藩史』第6卷(1971)
 「朝鮮國部百十三」『通航一覽』卷137(大正2)
 「朝鮮國部百五」『通航一覽』卷129(大正2)
 「蔚陵島(鬱陵島)渡航禁止の件」『日本外交文書』14-16卷(1881-83)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同」『公文録』内務省之部, 明治10年(1877.3.17)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大日本外交文書』明治3年(1870.4)
 『天保竹島渡海禁止令』(1837)
 『隠州視聽合記』(1667)
 「竹島」<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2015.8.15)
 「竹島=獨島論争(資料集)」<http://www.kr-jp.net/>(검색일:2015.8.15)
 「竹島問題」http://www.geocities.jp/tanaka_kunitaka/takeshima(검색일:2015.8.15)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2015.8.15)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일본 고문서에 나타난 일본의 독도 인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고문서를 통해 에도·메이지 시대 일본의 독도 인식이 과연 어떠한었으며 그들은 독도를 자신들의 판도로 간주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역사 사료 속에서 일본의 독도 인지는 한국에 비해 200년 이상 이후의 일이고 그것도 울릉도 도해를 하기 위한 표식(목표물)으로 이용하는 정도였다. 독도의 판도를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은 ①『은주시정합기』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다시 말해 독도(송도)를 일본의 판도의 즉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울릉도쟁계」의 최대 전환점이 되는 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조회에 대한 돗토리번의 「7개조답변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다’고 명언한 사실, ③「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국 부속이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점, ④ 1877년 3월 29일 발령한 「태정관지령」에서 ‘죽도(울릉도)외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므로 명심할 것’이라고 천명한 점 등 일본의 판찬기록 그 어디에도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보고 있다.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Recognition on Dokdo in Old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Japanese recognition on Dokdo through Japanese old document of Edo-Meiji era and examine if Japanese recognized Dokdo as her territory. Japanese recognition on Dokdo was 200 years later than Korea in historic materials and Japanese recognition was mentioned as a seaway mile-stone to reach Ulleungdo. The Japanese recognition on Dokdo boundary was ① Insyushichogaki (隱州洲視聽合記) described Japanese north-west territory border limits to Oki island, which explain the fact Matsushima=Dokdo was out of Japanese border and recognized Dokdo as Choseon(Korea) territory. ② The '7 articles in answer' in Ulleungdo Jaenggye(鬱陵島爭界) document which established by Dottori provincial government and answered to Edo Bahuku in December 24, 1695 as a turning point described 'Takeshuma=Ulleungdo and Matsushima=Dokdo do not belong to Dottori-han government', ③ Chosenkoku-kosaishimatsu-naitansyo(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Inspection re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 with Choseon) ordered to examine how 'Takeshuma=Ulleungdo and Matsushima=Dokdo annexed to Choseon', ④ 'Dajyokan-shirei(太政官指令)'(Order of Prime Minister) dated on March 29, 1877 manifested and declared 'Takeshuma=Ulleungdo and one island =Matsushima=Dokdo do not have any relation with Japan and keep in mind', which obviously revealed no Japanese territory in official old document of Japanese government. So, Dokdo belong to Korea in reality in the Japanese old documents.